

#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1

|          |  |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|------|---------|
| 심의일자     | 2017. 9. 8.(금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
| 사업명/신청위치 | 서초구 1582-3번지 일대 신축사업 / 서초구 1582-3번지 외 25 |      |         |
| 의결번호     | 2017-구조안전 12-1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의결과 | 조건부보고완료 |

[심의 내용] 구조안전 심의

-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

## < 구조안전 분야 >

- 구조도면에 내진설계와 배근상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하기 바람.
- 전이층 매트 단차부의 배근에서 발생 비틀림에 효과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늑근(stirrup)의 배근 표기를 폐쇄형 TYPE(HD25+HD29@100(폐쇄형 TYPE))으로 표기하기 바람.



- 전이플레이트의 통로 쪽 하부에 헌치를 설치하여 보완하기 바람.
- 전이플레이트에서 단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 설계시 가정된 대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람.
- 구조일반사항에 내진상세 적용부재 정리내용을 추가하여 시공시 혼동이 없도록 조치 바람.
- 인접건물 기초의 침하에 대해 충분히 검토 바람.
- 특수구조물에 해당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'공사 중 관계기술자 협력'이 구조설계자에 의하여 실시되도록 조치 바람.
- 구조도면에 대해 구조기술사가 검토 및 날인하기 바람. 끝.

2017. 09. 08.  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